

ITA의 개념

다음은 지난 달에 이어 연속적으로 게재되는 글로 지난 2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차 IEC CB(총회상임위원회)회의에 ISO 주재관이며 IEC CB위원인 김현일 과장이 참석하고 보내온 참석 결과 보고서중 중요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근 IEC동향을 전기·전자 관련 업계 여러분에게 알림으로써 국제표준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동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추가 자료가 있을 시 수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실은 내용은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질의가 있을 경우 기술표준원 전자정보표준과로 직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E-mail : lee532@ats.go.kr 전화 : 509-7403~4 담당 : 이승욱 사무관)

- 편집자주 -

개 요

- IEC는 기술 변화속도가 빠른 분야의 업계대표들로부터 “새로운 사업시작에 필요한 시방서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facility)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그러한 활동을 저비용·고속도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립적이고 제약없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는데, ITA(Industry Technical Agreement, 산업기술협정) 제도가 그것임. 이는 IEC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표준화 과정의 체계 및 관행과는 전혀 다른 체제내에서 사업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하는 것임.
- 무엇보다도, ITA 제도는 관련기술·표준화 참여자·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각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유연성의 정신 (spirit of flexibility)”을 염두에 두고 착상된 제도임.

ITA의 정의

- IEC/ITA는 생산 또는 시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변수들(parameters)을 규정하는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이며 [국제표준]은 아님.
- ITA의 지위는 본질적으로 현 산업의 [de facto 표준] 또는 [시방서]이며 향후 지위는 시장에 따라 결정됨. 만일 그것이 폭넓게 사용되고 신속히 [법률화(legalization)]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에는 기존의 [완전한 컨센서스 과정]을 거쳐 IEC 표준 또는 기타 IEC 기준문서로 전환될 수 있음.

ITA 적용범위

- ITA는 신속히 변화하는 기술부문(sectors)에서 주로 활용되나 넓은 의미로는 전기전자공학분야 (정보통신기술 포함) 전반에 걸쳐 활용될 수 있음.
- 그러나 안전·보건·환경보호·기타 규정이나 합의된 표준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ITA의 주제가 될 수 없음.

참 가

- 이해당사자 그룹(일반적으로 업계, 서비스공급자, 사용자)들은 IEC-ITA 절차에 따라 공동작업에 합의하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

발 의

- ITA 제안은, 협회를 구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위에 언급한 참가자 그룹이 제안.
- 참가자들은 ITA 절차에 의한 작업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컨소시엄을 아직 구성하지 않은 경우 이 시점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ITA 주체는 [컨소시엄] 멤버와 IEC의 동의를 얻어야 함.

메커니즘 개발

- 주제 및 참가자들의 여망에 따라, ITA는 개발된 워크숍에서 개발될 수도 있고, 제한된(개방되지 않은) 프로젝트팀에 의해 개발될 수도 있음.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IEC 중앙사무국이 통합 조정하는 전자교환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
- [컨소시엄] 멤버들은 ITA의 기술적 내용에 관한 결정권(sole arbiters)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각 프로젝트 수용기준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IEC 직원들은 [컨소시엄]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를 해야 함.
- IEC 중앙사무국은 각 ITA 프로젝트에 대한 컨버너 및 프로그램관리자 역할을 하며, 직원들 중에서 프로젝트담당자를 임명하여 [컨소시엄]에 보고하는 일을 부여하고, 정보통신·편집·출판 등 중앙사무국의 시기적절한 지원을 확인토록 함.
- 국제표준과 모순되는 ITA가 개발될 경우, 중앙사무국은 현행 IEC 표준, ISO/IEC 표준 또는 표준안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대립되는 내용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해야 함.

지적재산권(IPR) 설정

- IEC는 ITA에 대한 지적재산권(IPR)에 관하여 권리주장을 전혀 하지 않음. ITA의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체결은 [컨소시엄] 멤버들의 소관사항임.
- ITA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참가자들은 특허권이 있을 경우 이를 선언(신고)해야 하며, 특허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기간 및 조건으로 동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출판 및 판권

- [컨소시엄] 멤버들은 ITA 판권을 중앙사무국에 양도해야 함. IEC가 기 설립된 컨소시엄과 판권이 결합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IEC는 더블로고 또는 멀티로고로 출판.
- 가격산정은 IEC 출판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국가위원회, 기타 승인된 판로를 통해 판매. 공동출판의 경우, 타 당사자는 각 사안별로 IEC와 합의된 분배 및 판매권을 갖게 되며, 표준에 확립된 선례를 가급적 따라야 함.

독점 금지

- 경쟁력 상의 잇점을 이유로 ITA 프로젝트 참여를 배제하는 일이 없기를 IEC는 원함. 그러나 컨소시엄은 각 사안별로 IPR 입장을 결정하고 선언해야 함.
- ITA는 표준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명확한 성명(statement)을 출판물 앞 부분에 공시해야 함.

계획 수립

- 프로젝트담당자는 각 프로젝트별로 자원과 비용이 명시된 업무계획 수립을 위해 [컨소시엄]멤버들과 협의해야 함. 참가자들은 전문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IEC 중앙사무국은 하부조직(infrastructure)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유지 관리

- IEC 중앙사무국은 주기적(통상 연1회)으로 각 ITA를 검토해야 함. 컨소시엄과 IEC가 시장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ITA는 폐지되어야 함. 그러나 동일한 컨소시엄 또는 다른 컨소시엄내의 새로운 ITA 프로젝트로 바꿀 수는 있음.
- 시장의 수용이 명확하고 참가자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 ITA는 숙성절차에 의한 합의과정을 거쳐 IEC 표준 또는 기타 기준문서로 채택되도록 제출될 수 있음. 이 시점에서 컨소시엄 멤버들은 지적재산권 및 판권에 관한 IEC 관행을 따라야 함.